

의안번호	2206885
의 퇴 인	문금주 의원
회 답 일	2025. 2. 24.
추 계 번호	24F6241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 4년 연장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4년 연장할 경우, 소득세 및 법인세는 2027년 2조 6,697억원, 2030년 2조 9,577억원 등 2027년에서 2030년까지 4년간 총 11조 2,629억원(연평균 2조 8,157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2027~2030년, 소득세 및 법인세

(단위: 억원)

	2027	2028	2029	2030	누적	연평균
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적용기한 4년 연장 (안 제7조)	-26,697	-27,707	-28,647	-29,577	-112,629	-28,157
- 소득세	-14,878	-15,457	-15,951	-16,417	-62,703	-15,676
- 법인세	-11,819	-12,250	-12,697	-13,160	-49,925	-12,481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7조 (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)	○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을 4년 연장 - 적용기한: (현행) 2025.12.31. → (개정안) 2029.12.31.	

III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
1	안 제7조 (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)	○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은 2025년중 통과되어 2026년 귀속분부터 적용된다고 가정하며, 징수기준을 적용하여 세수효과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추계
 - 개정안에 따른 2026년 소득세 및 법인세 귀속소득에 대한 세수감소 효과는 징수기준으로 2027년부터 발생할 것으로 가정
- 개정안에 따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의 세수효과는 다음의 가정을 적용하여 추정
 - 향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액 중 소득세 감면액의 증감률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종합소득세 증가율 전망(2024.10.)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가정
 - －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액 중 소득세 감면액의 증감률은 종합소득세수 증감률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임에 따라 회귀분석을 통해 두 변수간 관계식을 도출한 후, 종합소득세 증가율 전망을 통해 향후 소득세 감면액 추계
 - ※ 2016~2024년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액과 종합소득세간 상관계수: 0.844
 - 향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액 중 법인세 감면액의 증감률은 최근 5년(2021~2025년)간 연평균 증가율(3.6%)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가정
 - － 법인세 감면액은 최근 법인세 증감과 관계없이 대체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

3. 상세 추계내역

(1) 제도개요 및 조세지출 실적

- (제도개요)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개인사업자 및 중소기업의 소득세 및 법인세를 본점 소재지, 기업규모 및 업종에 따라 구분하여 감면하는 제도
 - 동 제도는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목적으로 1992년 도입되었으며, 최근 10년간 성실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을 우대, 고용인원과 연계한 감면한도 도입, 감면대상 확대 등의 제도변화 존재

[표 2]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주요 연혁

개정연도	개정내용
2016	- 장수 성실중소기업*에 대해 감면율을 10% 확대 적용 ※ 10년 이상 계속사업을 영위하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인 「소득세법」상 성실사업자 - 감면대상 확대: 의원, 치과의원, 한의원, 임업 추가
2017	- 감면한도 설정: 1억원 - (500만원 × 고용 감소인원)
2020	- 감면대상 확대: 통관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, 자동차 임대업 추가
2022	- 수도권 지식기반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사업장에 대한 감면 삭제 - 알뜰주유소에 대하여 특별세액감면 한시적 도입(2022과세연도)

- 현행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본점 소재지, 기업규모 및 업종에 따라 5~30%의 감면율을 적용
 - 단, 장수 성실중소기업의 경우, 감면율의 10%(1.1배) 우대 적용

[표 3]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감면율

구분		도소매업 및 의료업	그 외 업종
수도권	소기업	10	20
	중기업	감면 배제	
비수도권	소기업	10	30
	중기업	5	15

□ (특례실적)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실적은 2021년 1조 9,528억원에서 2025년 2조 5,000억원으로 증가할 전망

- 세목별로 살펴보면, 소득세는 2021년 9,995억원에서 2025년 1조 3,998억원으로, 법인세는 2021년 9,534억원에서 2025년 1조 1,002억원으로 증가할 전망

[표 4]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실적

(단위: 억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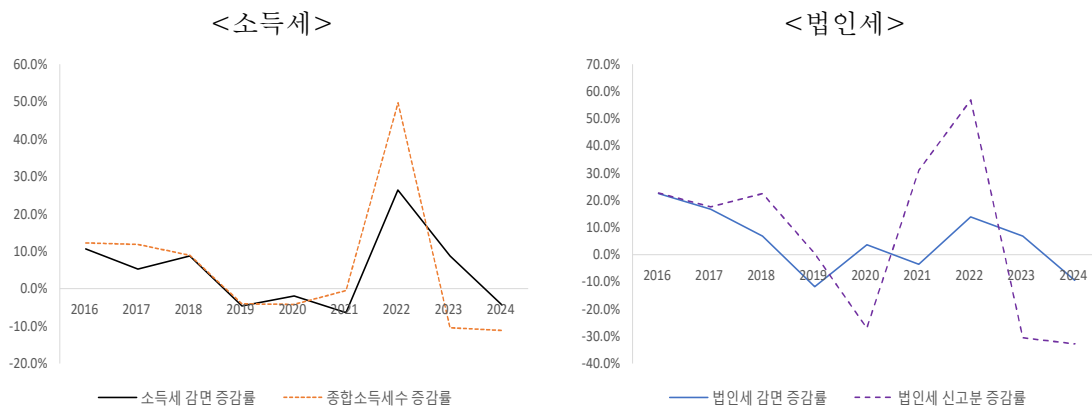
	2021	2022	2023	2024(잠정)	2025(전망)
감면실적	22,165	23,489	25,336	23,639	25,000
- 소득세	9,995	12,632	13,738	13,133	13,998
- 법인세	9,534	10,858	11,598	10,506	11,002

자료: 정부, 「조세지출예산서」, 각 년도

(2) 추계방법

- (감면실적 증감률과 세수증감률간 상관관계) 세목별 감면실적 중 소득세 감면실적의 증감률은 종합소득세수 증감률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임
 - 2016~2024년간 소득세 감면실적 증감률과 종합소득세수 증감률간 상관관계수는 0.844 수준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임
 - 반면, 동 기간 법인세 감면실적 증감률과 법인세 신고분 증감률간 상관관계수는 0.454 수준으로 높지 않게 나타남
 - 2020년 이후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로 경기국면 하강시 대기업을 중심으로 법인세수가 감소한데 반해, 동 기간 법인세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실적은 대체로 소폭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기 때문에 세수와 감면실적의 추세가 상이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
 - ※ 법인세 감면실적과 법인세 신고분간 상관관계수: ('16~'19년) 0.871, ('20~'24년) 0.458

[그림 1]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증감률과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분 증감률



자료: 정부, 「조세지출예산서」, 각 년도; 국세청, 「국세통계연보」, 각 년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2016~2024년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액 중 소득세 감면액의 증감률과 종합소득세수 증감률의 관계식을 회귀분석하여 추정하면, 종합소득세수 1% 증가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소득세 감면액은 0.416% 증가
 - 회귀식의 종속변수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액의 증감률, 설명변수는 종합소득세수 증감률 및 연도더미(2022년=1, 그 외=0)로 구성
 - 추정결과, 회귀식은 다음과 같이 구성
 - ※
$$\% \Delta \text{감면액}_t = 0.001 + 0.416^{**} \% \Delta \text{종합소득세수}_t + 0.209^{***} D_t + e_t$$

(0.046) (2.657)
(8.628)
 - 단, ()안은 t값이며, **는 5% 유의수준에서, ***은 1%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

로 유의함

- (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: 소득세) 소득세 감면액 증감률에 대한 회귀식을 바탕으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중 소득세 감면액의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정하면 다음과 같음
 - 국회예산정책처의 향후 종합소득세수 전망치(2024.10.)를 바탕으로 향후 소득세 감면액 증감률을 추정하면, 세수효과는 2027년 1조 4,878억원에서 2030년 1조 6,417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계

[표 5]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중 소득세 감면액 추정

(단위: %, 억원)

	2027	2028	2029	2030
종합소득세수 증감률 전망치(A)	7.4	9.2	7.5	6.8
소득세 감면액 증감률 전망치 ($B=0.001+0.416\times A$)	3.2	3.9	3.2	2.9
소득세 세수효과 추정치 ($C=C(\text{전년도})\times[1+B]$)	14,878	15,457	15,951	16,417

- (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: 법인세) 최근 추세를 반영하여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중 법인세 감면액의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정하면 다음과 같음
 - 법인세 감면액이 최근 5년(2021~2025년)간 연평균 증가율(3.6%)에 따라 증가한다고 가정하여 추정하면, 세수효과는 2027년 1조 1,819억원에서 2030년 1조 3,16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계

[표 6]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중 법인세 감면액 추정

(단위: %, 억원)

	2027	2028	2029	2030
법인세 세수효과 추정치	11,819	12,250	12,697	13,160

(3) 추계결과

-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

2029년 12월 31일로 4년 연장할 경우, 소득세 및 법인세는 2027년 2조 6,697억원, 2030년 2조 9,577억원 등 2027년에서 2030년까지 4년간 총 11조 2,629억원(연평균 2조 8,157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

[표 7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2027~2030년, 소득세 및 법인세

(단위: 억원)

	2027	2028	2029	2030	누적	연평균
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적용기한 4년 연장 (안 제7조)	-26,697	-27,707	-28,647	-29,577	-112,629	-28,157
- 소득세	-14,878	-15,457	-15,951	-16,417	-62,703	-15,676
- 법인세	-11,819	-12,250	-12,697	-13,160	-49,925	-12,481

IV. 부대의견

□ 없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박정환	백경엽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정환	02-6788-4835	jhpark83@assembly.go.kr